

瑞山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8. 20

3. 提案理由

-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가 일수를 가산하여 주고,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포상휴가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 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중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하도록 함(안 제18조).
- 병가 일수의 계산 병가의 운영방법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등 병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2).

- 출산 휴가시는 만기출산시 뿐만 아니라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산 휴가를 하도록 함 (안 제28조).

5.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로써
-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